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43호

「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고, 교육정원은 한정되어 있어 교육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상황인 바, 교육 유효기간을 조정하여 실수요자가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개인택시 양수교육의 유효기간을 조정(안 제2조제1항)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교통서비스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 > 정책자료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(검토의견)

#### 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  
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
- 전화 : 044-201-4755 / 팩스 : 044-201-5581
- 이메일 : [csw7168@korea.kr](mailto:csw7168@korea.kr)